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46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이정문・이개호・박 정

이인영 · 이학영 · 김남근

한민수 • 이연희 • 김동아

문진석 • 조승래 • 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 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 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계열회사"를 "계열회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내 계열회사"를 "계열회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계열출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열출자를 한 회사"를 "계열출자를 한 국내 회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계열출자대상회사"를 "국내 계열출자대상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주식에"를 "주식(국내 주식에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에"를 "주식(국내 주식에 한정한다)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이법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소유한 주식에 대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u>국내</u>	계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회사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②		
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			
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u>국내</u>	계열회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u>사</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			
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			
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u>계열출자</u>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 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 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 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 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 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 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 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5. (생략)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u>계열출자를 한 회사</u>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

1. ~ 5. (현행과 같음)
2
계열출자를 한 국내 회사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 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 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 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 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 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u>국내 회사</u>로서 순
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
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u>계열출자대상회사</u>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u>국내 회사</u> 중 하나가 취 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u>.</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u>회사</u> 	
제한) ① <u>회사</u>	
<u>회사</u> 	
	<u></u>
	국내 계열출자대상회사
	<u>.</u>
<u>회사</u>	②
	회사

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 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 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저 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 다.

② ~ ⑥ (생 략)② ~ ⑥ (현행과 같음)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_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_
	_
	_
,,	_
<u>회사</u>	_
	_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 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 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u>주식에</u> 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u>주</u> 식(국내 주	식에	한정한다)
<u>에</u>		
2		
		<u>주식(국내</u>
주식에 한정한	다)에-	